

수원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가합16369(본소), 2023가합2228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 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이준민, 이다연

피고(반소원고)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조준연, 유금성

피고 1. 중소기업은행

2. H조합

3. 주식회사 I

4. 주식회사 J

소송대리인 K

변론 종결 2024. 10. 30.

판결 선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각 19,007,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4.부터,
나. 피고 H조합은 각 7,471,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부터,
다. 피고 주식회사 I은 각 2,245,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4.부터
각 2024. 12.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J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7,690,76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G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H조합,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G 사이에 본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H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F에게 별지 목록 제2항1)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다.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4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라.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5항 내지 1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3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각 3,202,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에게,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각 22,175,807원, 피고 H조합은 각 11,125,826원,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 한다)은 각 2,620,0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피고 J'이라 한다)은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20,666,666원을 지급하라.

[피고 G의 예비적 반소]

1. 원고 A과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99/10,000 지분,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99/60,000 지분, 별지 목록 제5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99/300,000 지분이 피고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 F과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633/10,000 지분,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33/60,000 지분, 별지 목록 제5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633/300,000 지분이 피고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 B과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31/60,000 지분, 별지 목록 제5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31/300,000 지분이 피고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4. 원고 C과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31/60,000 지분, 별지 목록 제5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31/300,000 지분이 피고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5. 원고 D과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31/60,000 지분, 별지 목록 제5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31/300,000 지분이 피고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6. 원고 E과 피고 G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74/60,000 지분, 별지 목록 제5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74/300,000 지분이 피고 G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7. 피고 G에게, ① 원고 A은 8,632,021원 및 이에 대하여, ② 원고 F은 15,874,276원 및 그중 15,567,111원에 대하여, ③ 원고 B은 2,383,645원 및 이에 대하여, ④ 원고 C은 2,383,645원 및 이에 대하여, ⑤ 원고 D은 2,383,645원 및 이에 대하여, ⑥ 원고 E은 7,828,73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3. 11. 16.부터2)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망 N(192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11.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O가 2006. 3. 12. 먼저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G이 있다.
- 나. 피고 중소기업은행, H조합, I는 망인이 생전에 예금거래를 하던 금융기관으로, 망인은 사망 당시 위 피고들에 대한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 다. 피고 주식회사 J은 망인에게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4,000,000원에 2022. 1. 30.부터 2023. 1. 29.까지 임대한 임대인이다.
- 라. 망인은 2021. 12. 1. 자필로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 E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 G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유언장

1.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는 차남 원고 A에게 상속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 토지는 사녀 원고 F에게 상속한다.
 3. 나머지 나의 소유 예금과 부동산은 원고들에게 균등상속한다.
- 마. 망인의 사망 후 원고 A은 원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유언장을 받아 검인신청(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느단20621)을 하였고, 피고 G은 2023. 3. 15. 진행된 검인절차에 출석하여 유언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집행에 이의가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바.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내지 1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단독소유 또는 원고들과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과 피고 G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담보 제공을 위하여 망인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분에 관하여 우선 2023.

5. 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과 피고 G의 각 법정상속분(1/7)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원고들과 피고 G의 지분은 아래와 같다.

1	화성시 P 대 444.9m ²	토지	단독소유	1/7
2	화성시 L 대 246.2m ²	토지	단독소유	1/7
3	화성시 Q 대 254.8m ²	토지	단독소유	1/7
4	화성시 M 대 258.6m ²	토지	단독소유	1/7
5	평택시 R 과수원 1530m ²	토지	3/15	3/105
6	평택시 S 과수원 2595m ²	토지	3/15	3/105
7	평택시 T 과수원 593m ²	토지	3/15	3/105
8	평택시 U 과수원 1937m ²	토지	3/15	3/105
9	평택시 V 과수원 8243m ²	토지	3/15	3/105
10	평택시 W 과수원 1974m ²	토지	3/15	3/105
11	평택시 X 과수원 14209m ²	토지	3/15	3/105
12	평택시 Y 잡종지 1974m ²	토지	3/15	3/105
13	평택시 Z 과수원 14017m ²	토지	3/15	3/105
14	평택시 Y 지상 단층 우사[도로명주소: 평택시 AA]	건물	3/15	3/1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①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으로 망인의 모든 재산을 원고들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들을 포함한 망인의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 ② 그러므로 이 사건 유언장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토지는 원고 A이,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은 원고 F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14항 각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3/15 지분은 원고들이 균등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 G이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각 부동산 중 1/7 지분, 별지 목록 제5 내지 14항 각 부동산 중 3/10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G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유증받은 범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③ 따라서 피고 G은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F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부동산 중 각 1/42 지분(= 피고 G의 등기된 지분 $1/7 \times$ 원고들의 각 유증분 $1/6$)에 관하여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5 내지 14항 부동산 중 각 3/630 지분(= 피고 G의 등기된 지분 $3/105 \times$ 원고들의 각 유증분 $1/6$)에 관하여 각 원고들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유언장은 포괄적 유증이므로 망인의 예금채권은 피고 G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균등하게 귀속되고 피고 G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런데 피고 G은 그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2023. 3. 17. 상속인의 지위를 이용해 망인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중 피고 G의 상속분 1/7에 해당하는 19,213,998원을 인출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그러므로 피고 G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각 원고들에게 3,202,333원(= 19,213,998원 $\times$ 원고들의 각 유증분 $1/6$)과 그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G ① 망인은 1926년생으로 사망 약 3~4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고,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재산 중 '예금'과 '부동산'만을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의미이다.3)

나.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망인의 의사능력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2009다531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1926년생으로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2021. 12.경에는 상당한 고령이었던 사실, 망인은 2019. 12. 16. AB병원의 치매검사에서 K-MMSE4) 23점, CDR5) 1점으로 평가되어 치매 증상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유언장 작성일에 가까운 2021. 11. 16. 위 병원의 치매 관련 검사에서 K-MMSE 18점, GDS6) 4점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2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나 피고 G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위 유언장으로 표시되는 법률행위의 의미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의 망인의 의사능력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의미하는데(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 그 증상이 종류, 원인,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므로 치매 증상이 있다 하여 곧바로 법률행위의 의사능력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유언장 작성일에 가까운 2021. 11. 16. 망인의 검사 결과인 K-MMSE 18점은 경도의 치매 수준을, GDS 4점은 중등도의 인지장애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위 점수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 작성일 무렵에는 중증의 인지장애에 이르지 않은 경도의 치매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2021. 11. 16.경 K-MMSE의 세부 항목인 주의집중 및 계산(총 5점 중 2점), 기억회상(총 3점 중 0점)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지남력(시간 및 장소 총 10점 중 7점), 기억등록 항목(총 3점 중 2점), 언어 및 시공간 구성(총 9점 중 7점)에서 낮지 않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보면 망인이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촬영자의 질문에 명료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하고, 촬영자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정도의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유언장의 주된 내용은 망인의 재산 중 특정 부동산과 나머지 부동산 및 예금을 자녀들 중 오랜 기간 동안 왕래를 하지 않던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중요 재산을 유증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망인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 이해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법률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포괄적 유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의미하고(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078 판결 참조), 특정유증이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참조).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은 망인의 재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을 특정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 A, AC에게 유증한다는 것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망인 소유 예금과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균분하게 유증한다는 것으로 유증 대상 재산이 특정되어 있다. ② 또한 포괄적 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율적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건 유언장에 원고들에게 '균분'하게 유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을 원고 A, AC에게 단독으로 유증한다는 기재도 함께 있어 이 사건 유언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망인의 모든 재산을 비율적으로 원고들에게 유증하는 것이라

보긴 어렵다. ③ 특히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유언장에 기재된 '예금'과 '부동산'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피고 J에 대한 124,000,000원에 이르는 임대차보증금채권도 있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에 망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유증의 의사가 담긴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언장의 유증은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들을 특정유증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행청구의 일환으로 공동상속인이자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등기를 마친 유증의무자인 피고 G에게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자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물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G이 2023. 3. 17.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망인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남은 예금액 중 피고 G의 법정상속분인 1/7에 해당하는 19,213,99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은 특정유증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유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유증의무자에게 그 채권양도 등의 방법으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예금채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등 참조), 피고 G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증의 이행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의해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망인의 예금채권은 우선 그 공동상속인인 피고 G에게 그 법정상속분인 1/7 범위에서 당연히 귀속된다. 이에 따라 피고 G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액을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G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H조합, I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으로 망인의 예금채권을 원고들에게 균분하여 포괄적 유증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H조합, I에 대한 각 예금채권은 원고들에게 각 유증분(1/6)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각 22,175,807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예금액 133,054,844원 $\times$ 1/6), 피고 H조합은 각 11,125,826원(=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각 계좌 예금액 합계 66,754,960원 $\times$ 1/6), 피고 I는 각 2,620,050원(=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각 계좌 예금액 합계 15,720,303원 $\times$ 1/6)과 그 지연손해금을 예금채권의 포괄승계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예금채권의 승계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장의 내용은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유증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망인의 예금채권이 당연히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들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가분채권인 예금채권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법정상속분인 1/7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망인의 예금채권이 분할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각 법정상속분인 1/7

- 범위에서 망인의 예금채권을 포괄승계할 뿐, 이를 초과하는 예금채권까지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일에 가까운 2022. 12. 8.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3,054,844원의 잔액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계좌에 관한 망인의 예금채권은 원고들 각자에게 그 법정상속분인 1/7 범위에서 포괄승계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므로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들에게 각자에게 망인의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분할액 19,007,834원(= 133,054,844원 × 1/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 7. 4.부터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H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일 무렵 피고 H조합에 대한 2개의 망인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에 합계 52,299,625원(= 50,000,000원 + 2,299,625원)의 잔액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들은 위 각 계좌에 합계 66,754,960원의 잔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계좌에 관한 망인의 예금채권은 원고들 각자에게 그 법정상속분인 1/7 범위에서 포괄승계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므로 피고 H조합은 원고들 각자에게 망인의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분할액 7,471,375원(= 52,299,625원 × 1/7)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 8. 1.부터 피고 H조합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7),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일 무렵 피고 I에 대한 2개의 망인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의 잔액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합계 15,720,303원(= 12,720,303원 + 3,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계좌에 관한 망인의 예금채권은 원고들 각자에게 그 법정상속분인 1/7 범위에서 포괄승계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 I는 원고들 각자에게 망인의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분할액 2,245,757원(= 15,720,303원 × 1/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 7. 4.부터 피고 I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중소기업은행, I의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중소기업은행, I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상속분에 관한 분쟁이 있어 원고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예금채권은 상속이 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고, 예금채권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공탁 등의 방법으로 지급지체 책임을 피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거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에게 예금지급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중소기업은행, I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J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으로 망인의 모든 재산을 원고들에게 균분해 포괄적 유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망인의 피고 J에 대한 임차인 지위는 원고들이 유증분 범위(1/6)에서 포괄승계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2023. 1. 29.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⁸⁾ 각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분할액인 20,666,666원(= 임대차보증금 124,000,000원 × 1/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차인 지위의 상속 관계 이 사건 유언장의 유증을 포괄적 유증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유언장에 망인의 '예금'과 '부동산'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지위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언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유증받았다거나, 그 유증에 따라 유증분(1/6)의 범위에서 위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들은 2022. 11. 16.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 G와 함께 각자 법정상속분(1/7)의 범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공동상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및 동시이행관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의 말일인 2023. 1. 29.을 지나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J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공동임차인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 J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채무 164,680원과 장래 퇴거시 확인될 추가 시설훼손비 및 미납 공과금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바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 연체료 160,430원과 미납 관리비 4,25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망인 측이 이를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시설훼손비나 미납 공과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J의 위 주장은 164,680원(= 보증금 연체료 160,430원 + 미납 관리비 4,250원)의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제1항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 동시이행을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J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9) 피고 J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 J은 원고들과 피고 G에게 임대차보증금 123,835,320원(= 임대차보증금 124,000,000원 - 보증금 연체료 160,430원 - 미납 관리비 4,2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반환의무는 공동상속인들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분할이행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임차인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이 되고, 이와 같이 형성된 공동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586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고들은 피고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분할 채권임을 전제로 피고 G의 상속지분을 배제한 채 각자의 유증분(1/6) 범위 내에서의 원고들 각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는 원고들이 각자 자신이 포괄승계한 범위 내에서 피고 J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일 뿐 피고 G를 포함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 불가분채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의 귀속분 범위에서 이행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의 범위(1/7) 내에서만 인용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J은 원고들과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7,690,760원(= 공제 후 임대차보증금 123,835,320원 × 법정상속분 1/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G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 G의 예비적 반소는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류분을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이다.

그런데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본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G의 예비적 반소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위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의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소송의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고, 소송계속 법원은 본안재판에서 반소비용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 G의 예비적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하여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6.자 2017마6406 결정 참조).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H조합, I, J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G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석

판사강성대

판사김영미

별지

1) 피고 G은 반소로 원고들과 다른 별지를 제출하였으나 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 원고들 제출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의 부동산과 동일하므로 원고들 제출 별지 목록의 순번을 기준으로 함께 표시한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G은 원고 F의 단독 유증 대상인 '경기도 화성시 L 대 246.2m²'를 별지 목록 제4항으로 기재하고, 원고들 공동 유증 대상인 '경기도 화성시 M 대 258.6m²'를 별지 목록 제2항으로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이는 서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할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목록 제2항의 부동산을 위 L 토지로, 별지 목록 제4항의 부동산을 위 M 토지로 정정하여 표시한다.

2) 피고 G은 원고 F에 대한 반소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 내용과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반소청구원인 내용을 고려하면 '2023. 11. 16.부터'를 오기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G의 이 부분 주장(2024. 7. 26.자 준비서면 제12쪽 참조)을 이 사건 유언장을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으로 주장하는 취지로 선택한다.

4) 한국식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인지기능을 시간에 대한 지남력(5점), 장소에 대한 지남력(5점), 기억등록능력(3점),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5점), 기억회상능력(3점), 언어 및 시공간적 구성능력(9점)의 항목으로 나누고 총 30점 중 획득한 점수의 합계에 따라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이고, 획득한 점수가 낮을수록 심각한 치매상태를 나타내는데,

대략 24점 이하 20점 이상일 경우 경계영역, 19점 이하 15점 이상일 경우 경도, 14점 이하 10점 이상일 경우 중등도, 9점 이하일 경우 고도의 치매로 평가한다.

5) 임상치매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등급기준으로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 개인위생관리의 6가지 영역에 대한 환자 및 정보제공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CDR 척도가 0점이면 정상, 0.5점이면 치매가 의심스러운 단계, 1점이면 치매의 경도 단계, 2점이면 중등도 단계, 3점이면 중증 단계로 평가한다.

6) 전반적 악화 검사(Global Deterioration Scale): 보호자 및 환자에 대한 자세한 면담을 통하여 각 단계별로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예들을 확인하며 인지장애 정도 평가를 하는 검사이다. 1점은 "인지장애 없음", 2점은 "매우 경미한 인지장애", 3점은 "경미한 인지장애", 4점은 "중등도의 인지장애", 5점은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6점은 "중증의 인지장애", 7점은 "후기 중증도의 인지장애"로 평가한다.

7) 피고 H조합은 구체적인 이율의 주장 없이 정상적인 수신금리의 예금이자 상당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예금이자 상당액이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보다 낮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은 예금계약상의 이자가 아니라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8) 원고들은 청구원인에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며 단순 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에는 이 사사건 아파트 인도와 동시이행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택한다.

9)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와의 동시이행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면서도, 청구원인과 준비서면에서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